

CCTV 설치운영 내부 관리계획

기 관 명	동원요양원
소 재 지	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쇠루백로 130-14
전화번호	031-292-1389
대 표 자	조수현. 조증묵
관리책임자	조 수 현

동원요양원 CCTV 설치운영 내부 관리계획

제1장 총칙

제1조【목적】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 동원요양원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
제2조【정의】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"CCTV"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2. "화상정보"라 함은 "CCTV"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"정보 주체"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4. "정보처리"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.저장.편집.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【적용범위】 동원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【기본방침】 동원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, 노인학대 방지, 화재 예방,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CCTV 설치운영 및 관리

제5조【책임자 지정】 CCTV 설치·운영 관리 책임자(이하 '책임자'라 한다.)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CCTV 설치·운영 관리책임자

가. 책임자 : 대표자(시설장) : 조수현

나. 운영(담당)자 : 시설장 조수현

다. 모니터링(담당)자 : 시설장 조수현

2.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동원요양원 CCTV 설치 운영,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3.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 자를 겸 할 수 있다.

제6조【CCTV 설치】

1. 동원요양원 CCTV는 총 83대 설치하며 설치 장소는 각 호와 같다

합계	침실	공동거실	복도	현관	물리치료실	프로그램실	엘리베이터	식당	기타
83	47	10	4	3	1	4	2	2	10

2.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다.

3. 다음 각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,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.

① CCTV 운영 모니터

② 디지털 녹화기

③ 그 밖의 부대장치

제7조【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】

동원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CCTV 성능 : HD급(130만 화소)
2. CCTV 촬영 : 24시간 상시 촬영
3. CCTV 정보 보관기간 : 60일
4. CCTV 저장 : 130만 화소 이상(1,280x960), 초당 10프레임
5.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: 사무실에 있는 DVR
6. 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장소 : 사무실
7. 영상정보의 삭제주기 :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

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

제8조【CCTV 사용제한】

1.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 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①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 - ② 설치목적과 관련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회전 및 확대 (Zoom-in)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
 - ③ 녹음 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

제9조【화상정보 처리제한】

1. 책임자는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
 - 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열람·제공하는 경우
 -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- 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

- ④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⑥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0조【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제한】

1.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2.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,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 결정 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.
3.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첨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(화상정보) 이용·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①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
 - ②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
 - ③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
 -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 - ⑤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4.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5.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 단계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6. 책임자는 보유 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

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11조【처리 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】

1.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 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책임자는 처리 정보의 정정 및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(삭제) 조치 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2.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(정보통신망포함) 통지해야 한다.
 - ① 범죄수사 · 공소유지 ·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경우
 - ③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- ④ 그 밖에 정정·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12조【화상정보 보호 조치】

1. 책임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2.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.
3.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【화상정보 보관관리】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